

목 차

1 개인 시민세	
(1) 개인 시민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2
(2) 계산방법	2
(3) 개인 시민세 신고	3
(4) 납기 및 납부방법	3
(5)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에 대하여	4
(6) 조세조약에 대하여	4
(7) 일본 국외 거주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4
2 고정자산세	
(1) 고정자산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5
(2) 상각자산 신고	5
(3) 납기 및 납부방법	5
3 도시계획세	
(1) 도시계획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5
(2) 납기 및 납부방법	5
4 경자동차세	
(1) 경자동차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6
(2) 경자동차세 세율	6
(3) 경자동차세 신고	7
(4) 납기 및 납부방법	7
5 시(市)세의 납부	
(1) 납세관리인	8
(2) 시(市)세 납부 장소 및 납부방법	8
(3)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9
6 세무증명	9
7 세금에 관한 문의처	
(1) 시(市)세에 관한 문의처	10
(2) 국(國)세에 관한 문의처	13
(3) 현(縣)세에 관한 문의처	13

1 개인 시민세

개인 시민세는 후쿠오카시에 거주하는 분이 후쿠오카시의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개개인의 부담 능력에 맞춰 함께 부담을 하기 위한 시(市)세입니다. 개인 시민세에는 넓고 균등하게 부담하는 ‘균등할’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이 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현에는 개인 현민세가 있어 신고 및 납세 수속은 개인 시민세와 함께 후쿠오카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민세와 현민세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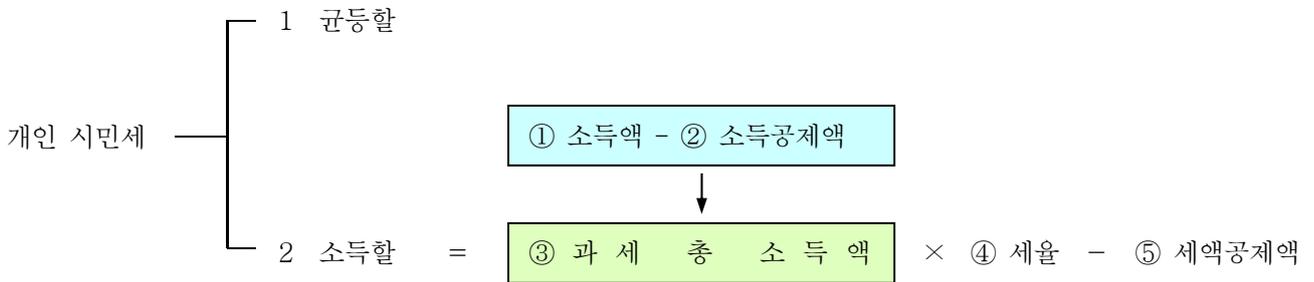
(1) 개인 시민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외국인에 대해서도 1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개인 시민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구 이외의 구에 사무소, 사업소, 집과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 지역구에서도 균등할이 단독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2) 계산방법

개인 시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 및 ①~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균등할

연간세액은 시민세 3,500 엔(그 외에 현민세 2,000 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소득할

소득할은 ①소득액에서 ②소득공제액을 제한 ③과세 총소득액에 ④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소득액

소득액이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급여소득의 경우, 급여수입액에 따라 급여소득공제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수입액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거주형태와 그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이란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지출 여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납세자의 실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소득 금액에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과세 총소득액

과세 총소득액이란 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한 후, 천 엔 미만의 단위를 반내림한 금액입니다.

④ 세율

소득할의 세율은 시민세 8%(현민세 2%)입니다.

⑤ 세액공제액

배당소득이나 외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개인 시민세 신고

1 월 1 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 해의 3 월 15 일까지 1 월 1 일 현재 주소지의 구청에 개인 시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분
- 전년도의 소득이 급여만으로 근무처에서 시청에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하신 분
-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 전년도 소득이 33 만 엔 이하인 분

(4) 납기 및 납부방법

시민세 납부는 ①보통징수와 ②급여에서의 특별징수, ③공적 연금에서의 특별징수로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보통징수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를 퇴직하여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송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 회(6 월, 8 월, 10 월 및 이듬해 1 월)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6 월	8 월	10 월	1 월

※ 납부기한은 월 말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잊지 않고 반드시 잔여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회사 종업원 등의 경우에는 급여지불자를 통하여 세액을 통지하고 급여지불자가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매달 급여에서 세액을 제하여 그 다음 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급여에서 제하도록 급여지불자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③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징수

연도의 첫날(4 월 1 일) 현재 노령기초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65 세 이상의 분으로 개인 시민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적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연금지급자가 공적 연금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을 연금지급일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적 연금의 소득 이외에 급여나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은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한 그 다음 해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국 후에 개인 시민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자세한 내용은 P8 을 참조)을 선임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구청 과세과에서 확인하십시오.



(5)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주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형태는 과세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비영주자와 영주자로 세분됩니다.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 '거주지'가 있는 분

(주)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는 없지만 일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비영주자: 거주자 중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 영주자: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분

● 거주형태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과 세 범 위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지불	국외 지불	국내 지불	국외 지불
거주자	비영주자	전액 과세	전액 과세	전액 과세	국외에서 지불되는 금액 중에서 일본 국내로 송금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과세 (따라서 국외에서 지불되는 소득 중 국외에 보유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주자	전액 과세	전액 과세	전액 과세	전액 과세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과세		비과세	

(6) 조세조약에 대하여

일본과의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개인 시민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국정부 직원, 교수, 유학생 등의 경우, 개인 시민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소득세가 면제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시민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7) 일본 국외 거주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친족을 대상으로 부양공제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때 친족 관계서류(주 1) 및 송금 관계서류(주 2)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 1) 친족 관계서류 예시

(1) 호적 부표 복사본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 해당 친족의 여권 복사본

(2)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해당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에 한함)

(주 2) 송금 관계서류 예시

(1)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외환 거래에 의해 신고자가 해당 친족에게 송금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여 해당 친족이 상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 등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이것들을 총칭하여 ‘고정자산’이라 함)을 소유한 분을 대상으로 해당 고정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아울러 고정자산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각자산……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기계, 차량, 기구, 비품 등



(1) 고정자산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고정자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고정자산이 있는 분이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 지	등기부 또는 토지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분
가 옥	등기부 또는 가옥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분
상각자산	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된 분

이와 같이 고정자산세는 등기부 또는 과세대장에 등기 또는 등록된 분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 등으로 고정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신 소유자로 변경되어도 1월 1일 현재 등기부 등에서 명의변경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상각자산 신고

상각자산 소유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 상점 등의 설비와 비품 이외에도 개인이 임대 주차장, 임대 맨션 등에 설치하는 펜스와 같은 외부 구조물, 포장도로, 주차장 설비도 상각자산 신고 대상입니다.

(3) 납기 및 납부방법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송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회(4월, 7월, 12월 및 이듬해 2월)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4 월	7 월	12 월	2 월



※ 납부기한은 월말까지입니다.(12월은 28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 또는 연말연시(12/29~1/3)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잊지 않고 반드시 잔여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 도시계획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 납부대상은 고정자산세의 납세의무자 중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시가화(市街化) 구역 내에 토지, 가옥을 소유한 분입니다.

(2) 납기 및 납부방법

고정자산세와 함께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회(4월, 7월, 12월 및 이듬해 2월)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4 월	7 월	12 월	2 월

※ 납부기한은 월말까지입니다.(12월은 28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 또는 연말연시(12/29~1/3)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4 경자동차세

(1) 경자동차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지정 보관 장소가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및 2륜 소형자동차(이것들을 '경자동차 등'이라고 함)를 소유하신 분에게 과세됩니다.

※ 4월 1일 이후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4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2) 경자동차세 세율

경자동차세의 세율은 경자동차 등의 차종 및 배기량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 · 배기량의 구분			세 율				
원동기장치 자전거	50cc 이하인 것		2,000 엔				
	2 륜	50cc 초과 90cc 이하인 것	2,000 엔				
		90cc 초과 125cc 이하인 것	2,400 엔				
	3 륜 이상(미니카)		3,700 엔				
경자동차	2 륜	125cc 초과 250cc 이하인 것	3,600 엔				
	3 륜	660cc 이하인 것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3,100 엔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2	3,900 엔			
			최초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	4,600 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1	전기 경자동차	1,000 엔		
				천연가스 경자동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2,000 엔 3,000 엔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5,500 엔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2	6,900 엔			
			최초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	8,200 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1	전기 경자동차	1,800 엔		
				천연가스 경자동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3,500 엔 5,200 엔		
			4 륜 660cc 이하	승용차 (자가용)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7,200 엔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2	10,800 엔	
					최초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	12,900 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1	전기 경자동차	2,700 엔
						천연가스 경자동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5,400 엔 8,100 엔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3,000 엔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2	3,800 엔			
			최초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	4,500 엔			

차종 · 배기량의 구분					세 액
경자동차	4 른 660cc 이하	화물차 (영업용)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1	전기 경자동차	1,000 엔
				천연가스 경자동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화물차 (자가용)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2	4,000 엔
				최초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	5,000 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 ※1	6,000 엔
				전기 경자동차	1,300 엔
				천연가스 경자동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소형 특수자동차	농경 작업용			2,400 엔	
	기타			5,900 엔	
2 른 소형자동차		250cc 를 초과하는 것			6,000 엔

※1 첫번째 연도에만 해당하는 세액(이후 연도는 ※2 세액을 적용)

(3) 경자동차세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자동차세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경자동차 등을 구입, 양수받아 취득한 경우
- 폐차, 매각, 양도, 도난에 의해 상실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경자동차 등의 지정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신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동기장차자전거(125cc 이하의 바이크), 소형 특수자동차 후쿠오카시내 구청 과세과 관리계(P10~12 참조)
- 경자동차(125cc 초과 250cc 이하의 바이크를 포함)
(일반사단법인)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후쿠오카 사무소
소재지: 히가시구 하코자키 후토 2초메 2-51
전화번호: 092-641-0431
- 2륜 소형자동차(250cc 를 초과하는 바이크)
규슈운수국 후쿠오카 운수(運輸)지국
소재지: 히가시구 지하야 3초메 10-40
전화번호: 050-5540-2078



(4) 납기 및 납부방법

경자동차세는 구청에서 발송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5 월
-----	-----

※ 납부기한은 월말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후쿠오카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일본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경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시(市)세의 납부

시(市)세는 납세자 여러분이 지정된 기한(납부기한)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 시현민세의 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상각자산), 경자동차세는 납세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십시오.

또한, 후쿠오카시에서 전출하거나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잊지 않고 잔여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관리인

시내에 주소, 거주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주소 등'이라 함)를 소유하지 않는 시민세,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납세통지서 등의 수령, 세액 납부 등 납세에 관한 사무 처리를 의뢰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납부에 지장이 없음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해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세목별로 다르므로 P10의 문의처를 참조하십시오.

(2) 시(市)세 납부 장소 및 납부방법

시(市)세는 구청에서 발송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납부기한까지 아래의 ①, ②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금융기관 및 편의점 납부

후쿠오카 시내의 은행, 신탁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우체국 은행,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편의점(개인 시현민세(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상각자산), 경자동차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 및 편의점에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창구에서 시(市)세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점에서는 바코드가 없는 납부서, 1매당 30만 엔을 넘는 납부서, 금액이 수정된 납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② 후쿠오카시 세금 신용카드 결제 사이트 납부(납부기한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한해서 납부서에 확인번호가 있는 개인 시현민세의 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상각자산), 경자동차세를 후쿠오카시 세금 신용카드 결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 세금액과는 별도로 금액에 따른 결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후쿠오카시 세금 신용카드 결제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십시오.

○ URL 직접 입력

URL

○ QR 코드 인식



(3)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연체료

시(市)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 이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까지의 기간은 특례기준 비율(전전 년 10 월부터 전년 9 월까지의 매달 은행의 신규 단기대출 약정 평균 금리의 합계를 12 로 나눈 비율로서 재무대신이 고지하는 비율에 연 1%를 더한 비율)에 연 1%를 더한 비율 <상한 연 7.3%>, 그 이후로는 특례기준 비율에 연 7.3%를 더한 비율(상한 연 14.6%)로 계산됩니다.

<연체료 비율>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까지의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한 이후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6%	8.9%

○ 체납처분

후쿠오카시에서는 체납자가 단순한 부주의나 어떤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납부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촉에도 불구하고 납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한 납세자와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또 시(市)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재산(급여, 예·저금, 부동산, 동산 등)을 차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그 차압한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 시(市)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6 세무증명

소득증명서 등 세무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재류카드, 여권 등)를 지참하시어 각 구청의 과세과, 재정국 납세관리과(P10~12 참조)를 방문하십시오.

대리인(가족을 포함)이 교부를 받을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 연도, 부수에 대해서는 제출기관에 확인하십시오.(예: 비자 갱신 → 입국관리국 등)

(세무증명의 일례)

명칭	증명내용	수수료
시현민세과세·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개인 시현민세의 과세액, 소득액 등	1 건 300 엔
납세증명서	시(市)세의 과세액, 납세액 등	1 건 300 엔
경자동차세(계속 검사용) 납세증명서	경자동차세 체납의 유무 (경자동차 차량검사 시에 필요한 증명서)	무료

7 세금에 관한 문의처

시(市)세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시오. 또한, 직접 문의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분을 통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市)세에 관한 문의처

【시청 담당 창구】

문의사항	담당과(계)	
· 시(市)세에 관한 증명서 발행 및 교부 · 경자동차세 과세	①관리계	각 구의 과세과
· 보통징수되는 개인 시현민세 신고 및 과세, 납세관리인 신청	②시민세계	
·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토지) 과세, 납세관리인 신청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가옥) 과세, 납세관리인 신청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 개인 시현민세(보통징수),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납세 상담	⑤각 구의 납세과	
· 시(市)세의 계좌이체 접수 · 신용카드 납부(계좌이체로부터 변경하는 경우)	⑥관리조정계	납세관리계
· 시(市)세에 관한 증명서 발행 및 교부	⑦수납관리계 ⑧법인수납관리계	
· 초과납부 세금 환급		
· 개인 시현민세(특별징수) 및 법인시민세, 사업소세, 시(市)담배세, 입욕세 납세 상담	⑨법인납세계	법인세무과
· 특별징수되는 개인 시현민세 과세	⑩특별징수계	
· 법인시민세 과세, 납세관리인 신청	⑪법인시민세계	자산과세과
· 고정자산세(상각자산) 과세, 납세관리인 신청	⑫상각자산계	
· 사업소세, 담배세, 입욕세 과세, 납세관리인 신청	⑬사업소세계	
· 본 안내서에 대한 문의	⑭세제과	

【각 구청 및 시청(본청) 연락처】

구명	담당과(계)	전화번호	FAX 번호	이메일	소재지
히가시구	①관리계	645-1021	632-4970	kazei.HIWO@city.fukuoka.lg.jp	〒812-8653 히가시구 하코자키 2초메 54-1
	②시민세계	645-1026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645-1031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645-1033			
	⑤납세과	645-1022		nozei.HIWO@city.fukuoka.lg.jp	

구명	담당과(계)		전화번호	FAX 번호	이메일	소재지
하카타구	과세과	①관리계	419-1022	476-5188	kazei.HAWO@city.fukuoka.lg.jp	〒812-8512 하카타구 하카타에키마에 2초메 9-3
		②시민세계	419-1027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419-1032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419-1034			
	⑤납세과	419-1023	nozei.HAWO@city.fukuoka.lg.jp			
주오구	과세과	①관리계	718-1049	714-4231	kazei.CWO@city.fukuoka.lg.jp	〒810-8622 주오구 다이묘 2초메 5-31
		②시민세계	718-1038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718-1045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718-1047			
	⑤납세과	718-1028	nozei.CWO@city.fukuoka.lg.jp			
미나미구	과세과	①관리계	559-5031	511-3652	kazei.MWO@city.fukuoka.lg.jp	〒815-8501 미나미구 시오바루 3초메 25-1
		②시민세계	559-5041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559-5051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559-5053			
	⑤납세과	559-5169	nozei.MWO@city.fukuoka.lg.jp			
조난구	과세과	①관리계	833-4024	841-2145	kazei.JWO@city.fukuoka.lg.jp	〒814-0192 조난구 도리카이 6초메 1-1
		① 시(市)세 증명 창구	833-4029			
		②시민세계	833-4032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833-4036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833-4038			
	⑤납세과	833-4026	nozei.JWO@city.fukuoka.lg.jp			

구명	담당과(계)	전화번호	FAX 번호	이메일	소재지	
사와라구	과세과	①관리계	833-4318	841-2185	kazei.SWO@city.fukuoka.lg.jp	〒814-8501 사와라구 모모치 2초메 1-1
		②시민세계	833-4320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833-4326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833-4328			
	⑤납세과	833-4317	nozei.SWO@city.fukuoka.lg.jp			
니시구	과세과	①관리계	895-7013	883-8565	kazei.NWO@city.fukuoka.lg.jp	〒819-8501 니시구 우치하마 1초메 4-1
		②시민세계	895-7017			
		③고정자산세 토지계	895-7019			
		④고정자산세 가옥계	895-7021			
	⑤납세과	895-7014	nozei.NWO@city.fukuoka.lg.jp			
납세관리과	⑥관리조정계	711-4490	711-4219	nozeikanri.FB@city.fukuoka.lg.jp	〒810-8620 주오구 덴진 1초메 10-1 시청 (북쪽 별관)	
	⑦수납관리계					
	⑧법인수납관리계	711-4217				
	⑨법인납세계	711-4215				
법인세무과	⑩특별징수계	711-4211	733-5556	hojinzeimu.FB@city.fukuoka.lg.jp		
	⑪법인시민세계	711-4194				
자산과세과	⑫상각자산계	711-4438	733-5902	shisankazei.FB@city.fukuoka.lg.jp	〒810-8620 주오구 덴진 1초메 8-1	
	⑬사업소세계	711-4195				
⑭세제과		711-4202	733-5598	zeisei.FB@city.fukuoka.lg.jp		

(2) 국(国)세에 관한 문의처(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jp/>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후쿠오카 국세국	411-0031	812-8547 하카타구 하카타에키히가시 2초메 11-1	
후쿠오카 세무서	771-1151	810-8689 주오구 덴진 4초메 8-28	주오구, 미나미구
니시후쿠오카 세무서	843-6211	814-8602 사와라구 모모치 1초메 5-22	조난구, 사와라구, 니시구
하카타 세무서	641-8131	812-8706 히가시구 마이다시 1초메 8-1	하카타구, 히가시구 (가시이 세무서 관할내 제외)
가시이 세무서	661-1031	813-8681 히가시구 지하야 6초메 2-1	히가시구 일부

(3) 현(県)세에 관한 문의처(자동차세, 사업세 등) ※ 후쿠오카현 홈페이지: <http://www.pref.fukuoka.lg.jp/>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후쿠오카 현세무과	643-3062	812-8577 하카타구 히가시코엔 7-7	
하카타 현세사무소	473-8311	812-8542 하카타구 하카타에키마에 1초메 17-1	하카타구, 미나미구
히가시후쿠오카 현세사무소	641-0201	812-8543 히가시구 하코자키 1초메 18-1	히가시구
니시후쿠오카 현세사무소	735-6141	810-8515 주오구 아카사카 1초메 8-8	주오구, 조난구, 사와라구, 니시구